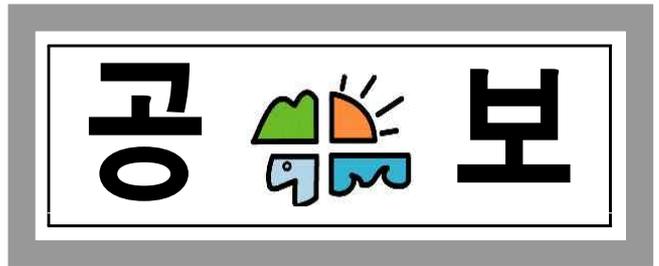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25호 2012년 10월 11일(목)

공 고

- 만리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주민공람공고..... 2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만리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주민공람공고

만리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10월 11일

속 초 시 장

1. 공고목적 : 만리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주민공람
2. 공람내용
 - 가. 공 원 명 : 만리공원(근린공원)
 - 나. 위 치 : 속초시 교동 산231-1번지 일원
 - 다. 결정면적 : 104,010㎡(공원 전체면적 변경없음)
 - 라. 변경내용
 - 공원내 보행로 동선변경, 광장, 테니스장, 족구장, 농구장, 풋살장, 체험학습장, 주차장 등 시설물 재배치
3. 공람기간 : 홈페이지게시일로부터 15일간(2012. 10. 11 ~ 10. 25)
4. 공람장소 : 속초시청 문화체육과(☎ 033-639-2254)
5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 비치)
6. 의견제출 :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